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 .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구미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하고 요금감면 및 요금조정 대상 추가

2. 주요내용

가. 구미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용어 변경사항 반영

· 현행 : 시설분담금 → 개정 : 원인자부담금

나. 긴급누수복구공사 등으로 인한 요금감면(안 제41조의 2)

다. 가구별 요금조정 대상에 전원주택단지 추가(안 제32조)

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도법」,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를 삭제한다.

제6조의4제3항 중 “분담금을”을 각각 “부담금을”로 한다.

제12조제1항 단서 중 “제49조 제2항”을 “제49조제2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분담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제3항 중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를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한다.

제27조제3항제4호 중 “병용하는”을 “같이 쓰는”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1”을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제15조의 시설분담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를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 및 전원주택단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제2항 내지 제5항”을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을 “어느 하나”로 한다.

제41조의2제1항 본문 중 “누수로”를 “누수 및 긴급 누수복구공사로”로 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을 “어느 하나”로 한다.

제51조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53조 중 “것이외”를 “것 이외”로 하고,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과태료와 관련해서는 「질서위반행위법」의 규정을 따른다.

제6조의4제3항,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1항제3호, 별지 제 2호서식, 별지 제 3호서식, 별지 제 4호서식, 별지 제 5호서식 및 별지 제 6호서식 중 “시설분담금”을 각각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별표1]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 (정의) ----- -----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9. “시설분담금”이란 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구경 확대공사 등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삭 제>
10. ~ 12. (생략)	10. ~ 12. (현행과 같음)
제6조의4(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제6조의4(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①·② (생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세대별 계량기의 시설분담금은 기존 주 계량기 설치시 세대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별로 분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③ ----- ----- -- <u>분담금</u> ----- ----- <u>분담금</u> ---- -----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급수공사의 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상수도 미 인입지역 신설급	제12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 -----. -----

수공사는 대지경계까지 200m
이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
반회계에서 부담하고, 노후 계
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제49조 제2항에 의한 철거
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교체공사시의 공사비용은 시에
서 부담한다.

② ~ ④ (생략)

제13조 (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를 설계에 의한 실액
제로 하고, 분담금, 방수 및 관
세척 손실금 등을 합산한다.

② ~ ④ (생략)

제15조(시설 분담금) ① 전용 급
수설비와 사설공용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개조, 수전분리(급수
관의 구경확대 공사에 한한다)
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별표 1]의 시
설분담금을 제14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2호이상의 공동주택(대단위
아파트, 다세대주택)에 대한 급
수전은 단일 수도계량기를 설치

---- 제49조제2항-----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 (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

----- 원인자부담금-----
-----.

② ~ ④ (현행과 같음)

<삭 제>

하여 검침하거나, 각호별로 계
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전체호
수에 세대당 시설분담금을 곱하
여 징수하고, 전체호수에 시설
분담금을 곱한 금액과 급수공사
시 설치할 수도계량기의 시설분
담금중 그 금액이 많은 것을 징
수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하는 공설공용의 급수설비
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
하지 아니한다.

④ 급수관의 구경확대 및 수전
분리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신·구 구경별 분담
금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급수설비가 이미 설치된 장
소에 공동주택(대단위 아파트,
다세대주택)을 증축하는 경우의
시설분담금은 각호별로 산정하
되, 이미 설치된 급수관별 시설
분담금에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에는 그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
다.

⑥ 급수설비가 이미 설치된 장

소에 급수의 용도를 변경하여
가구분할조정을 할 경우 세대별
계량기가 설치되어야 하며, 기
존 주계량기 설치 시 세대별분
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각
세대별로 징수한다.

제16조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
영) ①·② (생략)

③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
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납
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1
2조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7조 (급수중지와 폐전) ①·②
(생략)

③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
전할 수 있다.

1. ~ 3. (생략)

4. 정호수 또는 지하수와 수도
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
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와 상수도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을 때

제16조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
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제12
조부터 제14조까지-----
-----.

제27조 (급수중지와 폐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3. (현행과 같음)

4. -----
-- 같이 쓰는 -----

④ (생략)

1. ~ 3. (생략)

③ 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별 총 사용량을 사용가구로 나눈 수량을 각 가구별사용료로 산출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공동주택(연립주택, 아파트)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 2호(분양단위 이하 같다)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별 총 사용량을

④ (현행과 같음)

_____ 어느

하나 _____

_____.

1. ~ 3. (현행과 같음)

[illegible]

③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 및 전원주택단지----

사용호수로 나눈 수량을 각 호
별로 사용료를 산출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⑤ (생략)

⑥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구별 요금조정(이하 "가
구분할조정"이라 한다)의 적용
을 받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
택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39조(수도요금의 선납 및 보증
금)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도
요금의 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
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 4. (생략)

②·③ (생략)

제41조 (요금등의 감면 및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 또는 지
원할 수 있다.

1. ~ 8. (생략)

② (생략)

-----.

④·⑤ (현행과 같음)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

-----.

제39조(수도요금의 선납 및 보증
금) ① ----- 각 호의 어느
하나-----

-----.

1. ~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41조 (요금등의 감면 및 지원)
① ----- 어느 하
나-----
-----.

1. ~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1조의2 (누수량의 요금감면)

① 시장은 가정용, 「초·중등 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 대하여 수용가의 책임(고의, 과실)이 없는 지하, 벽체의 누수로 인하여 수도사용량이 과다함이 명백한 경우 누수량에 대하여 요금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수용가가 발견할 수 있는 물탱크자동개폐장치고장, 욕조, 변기, 보일러 등 누수 부분은 제외한다.

② (생략)

제44조 (정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 12. (생략)

② (생략)

제51조 (이의 신청) ① ~ ③ (생략)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3조 (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요금, 가산금,

제41조의2 (누수량의 요금감면)

① -----

누수 및 긴급 누수복구공사로 -

-----.

② (현행과 같음)

제44조 (정수처분) ① -----
----- 어느 하나-----
-----.

1. ~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1조 (이의 신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

제53조 (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 및 결손처분에 있어 이 조
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후단 신
설>

----- 것 이외-----
----- . 다만 과태
료와 관련해서는 「질서위반행
위법」의 규정을 따른다.

관계법령

□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 ①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1. 7. 28.>

②제1항 본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및 인가관청은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승인할 때에 그 수도의 설치에 든 비용을 전액 수돗물의 요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요금이 정하여지면 3개월 이내에 수도요금 생산원가, 요금부과 단가, 재원부족액, 부족 예산 충당 계획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일반수도사업자는 같은 법 제11조·제12조에 따른다. <신설 2013. 12. 30.>

④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교육시설·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

<신설 2010. 5. 25., 2013. 12. 30.>

1. 65세 이상인 자
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 「지방공기업법」

제22조(요금)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급부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금은 적정하여야 하고, 지역 간 요금수준의 형평을 도모하여야 하며, 급부의 원가를 보상하면서 기업으로서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금의 산정방식은 영업비용, 자본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요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 8. 4.]

소관 실·과		수 도 과
입 안 자	과 장	류 형 욱
	담 당	김 병 성
	담 당 자	이 희 영 (480-4452)